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4 - 26호

임실군의회 양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7. 5.

임실군의회 의장



## 임실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양주영 의원)

### 1. 제정이유

- 가. 고령화, 농어업 기계 사용, 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농어업작업 재해율이 전체 산업재해율 대비 높은 상황임
- 나. 농어업인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지만 안전재해 예방과 관리 역량, 재정, 전문인력 확보 등은 취약한 상황임
- 다. 이에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실군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적용대상,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 다.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예방지원 사업, 예방교육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7조)
- 라. 재정지원, 지도감독, 환수조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1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부(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불임)

다. 협 의 등 : 농촌지원과

라. 입법예고 : 2024. 7. 5. ~ 2024. 7. 10. (5일간)

마. 불 임 :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용어의 정의

## 임실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 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실군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어업작업”이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
4.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농어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7.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8.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6조의3 제1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임실군 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실군 내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지원 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사업

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5.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위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농어업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 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
6.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임실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양주영 의원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어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무급가족종사자’ 용어 정의**(출처: 국어사전)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의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1 이상을 근무한 사람

□ **‘무급종사자’ 용어 정의**(출처: 국어사전)

개인사업체에서 정규적인 보수 없이 적어도 정상 작업 시간의 3분의1 이상을 작업하는 사람